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7. 21 선고 2021가합111442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기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2022. 6. 23.

판 결 선 고 2022. 7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20,884,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“청구원인” 및 “변경된 청구원인”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 판사 이진화, 판사 선승혜, 판사 성재혁

별지

1) 원고는 2022. 6. 10.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“피고는 원고에게 320,884,2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”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, 2022. 6. 22.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“다 갚는”이라는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“피고는 원고에게 320,884,2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, 2022. 6. 10.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“다 갚는” 기재가 누락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, 2022. 6. 10.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2. 6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.